### 2022년 제2차「지역혁신 선도기업」선정계획 공고

충청북도 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「지역혁신 선도기업」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2년 7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

\* 관련 양식은 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http:/www.cbtp.or.kr) 알림마당의 해당 "사업공고"참조

# 1 사업개요

- □ (사업목적)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
- □ (선정규모)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·외
- □ (선정기간) 2023년 ~ 2028년(최대 6년)
  - ㅇ (자격 유지) 3년(1회) + 3년(연장)
    - ※ 최초 지정기간 3년,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통해 6년까지 가능
    - ※ 연장기준은 최초 지정기간 종료 1년 전에 별도 공고 예정
  - ㅇ (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 상실)
   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선도기업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기업

# 2 신청대상

□ 신청조건 : 접수마감일 기준 ① ~ ④ 모두충족, ⑤ ~ ⑥ 일부충족

※ 선택요건은 '필수지표 1개 +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' 또는 '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' 시 신청 가능

	구 분	세부기준	
	① 소 재 지	충청북도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	
기본	② 업 종	충북지역 주력산업 및 전·후방 업종 기업	
요건	③ 고 용	상시근로자 10명 이상	
	④ 매 출 액	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90억원 이상 중소기업 - 지역별 지역주력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-	
선택 요건	⑤ 필수지표	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 □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 1	2.2% 이상 23.9% 이상 0.2% 이상 3.9% 이상 출액)^(1/4) - 1
	⑥ 선택지표	□ 기업부설연구소 지역 내 보유	55.9% 이상 O, X 2건 이상

□ 선정제외 대상(접수 마감일 기준)

채무 불이행	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·회생절차의 개시 신청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)
부실위험	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기업(단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) *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기자본) ×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미반영" 또는 "부적정"
기타사항	<ul><li>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선도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</li><li>⑨ 국가 R&amp;D 참여 제한 기업(대표자 포함)</li></ul>

# 3 신청 및 접수

### 1 신청기간

ㅇ 공고·접수기간 : 2022. 7. 28.(목) ~ 8. 30.(화), 17시까지

② 신청서류 : 총 8부(원본 1부, 사본 7부)

구분	제출서류 목록	비고
	1. [붙임1] 신청기업 현황 조사표 (※엑셀자료 이메일 제출)	
	2. [붙임2]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- <서식1>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- <서식2> '17~'21년(5년)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(간접수출 증빙) <서식2-1> '17~'21년(5년) 직접 수출 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발급 등) - <서식3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대표자용, 담당자용) - <서식4>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
	3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	사본 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	4. 법인등기부등본 1부	원본
필 수	5. 중소기업 확인서 1부	
	6. '19~'21년(3년)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(※각 연도별 구분 출력 필수)	
	7. '17~'21년(5년)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① '17~'21년 재무제표 *(국세청 홈텍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발급) ② '21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*(국세청 발급분)	
	8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
	9.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)각 1부 -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(https://case.ftc.go.kr/ocp/co/violtInqire.do) 발급 - 요청부서 :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(대전, 충청) - 조회기간 : 2021.01.01 ~ 발행일	
	1. <서식5> 지역청년인재 고용 비중 확인서 - 지역청년인재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	
해당 시	2.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(KOITA 발급)	사본 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	3.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	사본 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
※ <u>신청서 및 관련 서류</u> 등을 스캔하여 압축 후, <u>붙임1. 신청기업 현황 조사표와</u>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(chomy@cbtp.or.kr)

- ③ 신청방법 :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
  - (온라인)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(http://contact.cbtp.or.kr)를 통해 공통 제출서류 등록 및 첨부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여 접수
  - (오프라인) 제출서류를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 제출 (28116)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,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 〈선도기업 담당자〉
- \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
- \* 온라인 접수기간(마감일 18:00)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
- \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# 4 선정 및 평가내용

### □ 선정절차

공 고	$\Rightarrow$	신청서 접수	ho	현장평가	$\Diamond$	발표평가	$\Rightarrow$	지역혁신 선도기업 추천	$  \Rightarrow  $	검증 및 제척 결과안내	$\Diamond$	최종선정
지자체		지자체 (TP)		지자체 (TP)		지자체 (TP)		지자체 →중기부		중기부 →지자체		지자체
7.28~8.30		8.16~8.30		9월		9월		~10.5까지		10월 중		10월 중

- \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평가항목
  - ① (요건심사) 선도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, 제출 서류 검토 등
    - \* 평가방법 :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제출된 서류

- ② (현장평가)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
  - \* 평가방법 : 평가위원, 전담간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 및 주생산품, 기업부설연구소, 경영자(경영간부)면담 등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의 기본역량 확인

#### <현장평가 항목(안)>

구분	구분 평가내용			
I. 기본사항	• 제출서류 확인			
II. CEO의 협업의지	• 사업추진 분야 경험/지식	10점		
표. CEO의 합합의시	• 리더쉽 및 네트워킹 역량, 경영철학	20점		
Ⅲ. 사업화 기본역량	• 조직관리현황(연구개발조직 등)	10점		
교. 시합화 기근칙당	• 사업운영 현황(인프라 및 제조 환경)	20점		
IV. 협업 전략	•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 및 특화전략	20점		
IV. 86 27	• 협업관련 주력제품 검토	10점		
합계 10				

- ③ (발표평가)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(ppt) 및 질의응답
  - \* 평가방법 : 7인 내·외 구성된 전문가(주력산업, 경영 등)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기업당 30분(발표 15, 질의응답 15)으로 대면평가 진행

#### <발표평가 항목(안)>

구분	구분 평가항목			
- +1010171	• 과거 협업 실적	20점		
I. 협업역량(40)	• 향후 협업 계획의 혁신성·타당성·지속가능성, 주력 산업 파급효과(협업규모) 등	20점		
T 이바여라(20)	• R&D 집중도, 인력, 국내외 특허 등	15점		
ш. 일반역량(30)	• 고용, 매출, 수출증가율	15점		
m 기기체 기우(20)	• CEO의 사업추진 의지, 기업인증 여부	15점		
IⅢ. 지자체 자율(30)	• 일자리 확대 가능성, 매출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	15점		
합계				

- □ 선도기업 추천 및 검증·제척
  - ① (선도기업 추천) 서면, 현장,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별 자지체장이 선정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를 평판 조회 후 중기부 추천
    - \* 추천방법: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자체 추천서 상에 추천 기업명, 주사업장 소재지, 협업계획, 협업대상(기업, 기관)을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추천서 제출
    - \* 평판조회 : 지자체 홈페이지에 선도기업 기본현황 정보를 게시, 평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선도기업으로 확정
  - ② (선도기업 검증·제척) 지역별 광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중기부 주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
    - \* 검증방법 : 중기부 주관 검증·제척위원회에서 지역별 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한 지정 적정성 판별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 결과 회신
  - ③ (최종선정) 중기부 검토 결과를 시·도민 및 선도기업 신청기업에 안내

#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

- □ 지원내용
  - 사전기획, 사업화지원(1차년도) : 50백만원 내·외 직접지원

구분	지원 프로그램	지원내용				
사전	선도기업 협업체계 구축 컨설팅	• 선도기업별 맞춤형 협업 프레임워크 설계 지원				
기획	R&D 과제기획서 컨설팅	• 선도기업 중심의 공동R&D 및 기술역량 강화지원				
	인증지원	•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증[제품(성능) 인증, 표준화 인증] 확보를 통한 국내외 신규 시장 진출 기회확대				
사업화	온/오프라인 마케팅	•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제품 홍보(온/오프라인) 서비스 구축				
지원	사업화 전략 추진 지원	• 개발 제품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, 해외 진성바이어를 찾고 이에 대한 바이어 접촉을 위한 지원				
	국내/외 전시회 지원	•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국내/외 전시회 참가 지원				

### o R&D지원(24년도~)

구분	지원내용					
기술개발	•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기업(관)과 기술개발 지원(최대 6년(3+3), 20억)					

- \* R&D는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금액 및 대상 여부 변경될 수 있음
- ㅇ 맞춤형지원(1, 2, 3차년도)

지원 프로그램	지원내용				
중기부(안)	<ul> <li>정책자금 대출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한도 지원</li> <li>기술 보증비율 10%p 상향(85%→95%), 보증료 0.3%p 감면</li> <li>투자자 미팅, IR 컨설팅, 지역펀드 선정우대</li> <li>KOBACO '방송광고지원사업' 선정평가시 우대</li> <li>중기부 '수출바우처 사업'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, 협력기업의 OKTA(세계한인 무역협회) 연계 지원시 선정우대</li> <li>공영홈쇼핑 방송 판매 기회 확대, 마케팅 대행역할 수행</li> <li>병역특례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유치 지원</li> <li>직원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 진학 시 등록금 지원 우대</li> <li>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시 가산점 부여</li> <li>균형위 지방자치박람회 등과 연계한 채용박람회지원</li> <li>중소기업간 협업컨설팅, 교류회, 우수기업 포상 등</li> </ul>				
지자체(안)	• 선도기업 선정 이후 지역 내 지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				

- □ 지정기간, 지정취소, 졸업 등의 사항
  - o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·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

# 6 기타 유의사항

- o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,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, 지원내용 등 선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대상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,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,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.

# 7 추진일정

□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·평가 일정

절 차	주요 사항	일 정
지역별 사업 공고	▶ 지자체, TP 홈페이지 등	7. 28(목) ~ 8. 30(화)
$\hat{\mathbb{T}}$		
신청 · 접수	▶ 온라인 서류 접수(컨택센터) ▶ 오프라인 서류제출(방문 및 우편제출)	8. 16(화) ~ 8.30(화)
Û		
(1단계) 요건심사	▶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요건심사	9월
Ŷ		
(2단계) 현장실사	▶ 현정점검 및 CEO(총괄책임자) 면담 ▶ 신청서 내용의 사실확인 및 검증 등 ▶ 장소 : 각 기업 사무실	9월
Ŷ		
(3단계) 발표평가	<ul> <li>▶ 기업당 30분 내외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)</li> <li>▶ 총괄책임자 ppt 발표 준비 필수</li> <li>▶ 장소 : 충북TP(기업별 시간 추후안내)</li> </ul>	9월
Ŷ		
지역혁신선도기업 추천	▶ 충청북도 → 중기부 * 제출서류 : 공문, 평가내용 등	10월 중
Ţ		
기업 검증 및 제척 결과 통보	▶ 제척된 지역혁신선도기업 결과통보	10월 중
Ţ		
지자체 확정	▶ 기업 평판 등을 최종 평가하여 확정	10월 중

<sup>\*</sup>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# 8 관련법령

### □ 지원근거
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)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(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-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(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), 제13조(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), 제14조(조세의 감면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지역 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), 제13조(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)

### □ 관련규정

-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39호)
- ☞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- ☞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

# 9 문의처

### □ 주관기관

문의처	연락처	
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	조미영 전임연구원	043-270-2216

# 붙 임1 협업형 선도기업 육성 선진사례 <참고>

### □ (이탈리아) 협업형 중소기업군 육성정책 (09년~)

- o (정책목표) 대표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들이 각자 핵심 역량을 협업 계약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
- (주요내용)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계약을 통해 협업
  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협업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
  - ①수직계열화 ②공동입찰 ③공동 공급계약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④공동 R&D 및 신제품개발 계획 선정
- **(육성방안)** (5년 내외) ①투자 세금감면 (최대 기업별 백만유로) ②금융지원 (유럽 은행이 계약 당 일억 유로까지 지원) ③행정절차 간소화 지원
- **(선정결과)** 7,171건 협업계약 체결(~21.7, 관련기업 40,647개사)

### □ (일본) 중소기업 경영강화를 위한 협업계약 지원정책 (05년~)

- (정책목표) 협력계약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해 대기업의 글로벌 소싱
   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
- (주요내용)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타 중소기업들과 규약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성시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승인
- **(육성방안)** (3~5년 내외) ①보조금 지금(3천만엔), ②정책자금 융자(무이자 또는 처리), 신용보증 특례지원, ③신주인수권 매수, ④특허료 경감 등
- **(선정결과)** 1,078건 협업계약 체결(~20.12, 주기적 졸업제로 총계약수 유지)

### □ (일본) 지역내 거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(17년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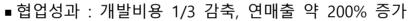
- (정책목표) 역내에서 중간재를 구매하고 역외에 판매하여 지역경제의
   중핵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갈 기업군 육성
- (선정결과) 4,743개사(~20년) 선정 후 '22년 중간평가, '24년 갱신 평가를 통해 사업 효율성 강화 예정

# 붙 임2 중소기업 간 협업 개념 및 협업 유형 <참고>

- □ **협업 개념** :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, 원자재 구매, 생산, 판매 등에서 각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·생산·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(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9호)
- □ 협업 특징 : 자사의 특화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, 비특화부문은 협업으로 조달하여 고정비 및 초기 투자비 부담이 줄어 경영위험성 개선 및 원가절감이 가능
- □ **협업 유형** : R&D, 생산, 마케팅, 서비스 협업 4가지 형태로 분류
  - <sup>①</sup> **R&D중심형** : (주체) **R&**D 전문업체 + (참여) **R&**D·생산·마케팅업체

동서 하이텍(주) (울산)

■ 세륜기 제작기업에서 친환경 무인세차기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총괄개발만 담당하고, 장치·시스템 개발은 협업기업(3개)에게 분담





② 생산중심형 : (주체) 생산 전문업체 + (참여) R&D·생산·마케팅업체

㈜에스 피텍 (경기)

■LCD 특성평가 측정시스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생산만 담당하고 뉴젠텍(해외)과 지엔비테크(국내)에 국내외 영업 협업

■ 협업성과 : 3년만에 230% 매출 증가, 100만불 수출 달성



③ 마케팅중심형 : (주체) 마케팅 전문업체 + (참여) R&D·생산업체 등

대인 모비닉스 (경기)

■ 게임기 TET-LCD 모니터 모듈 개발·생산·판매에 대한 고정비 부담 으로 마케팅과 총괄개발만 담당하고, 금형개발 및 생산:물류 협업

■ 협업성과 : 생산라인 폐쇄에 따른 고정비 감소, 일본 1천달러 수출



④ 지식서비스중심형 : (주체) 서비스 전문업체 + (참여) 서비스·생산업체 등

다나 티앤씨 (서울)

■ 기존 일회용 마스크 기능개선을 위해 시장조사, 소비자 니즈 분석, 디자인만 담당하고, 시제품 제작 및 생산유통 협업

■ 협업성과 : 디지인·제조·유통 업체간 매출공유 1% 협약 체결

